

제279회 임시회  
2009.4.22(수)

# 심 사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09. 4. 22(수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민경환 의원 외 6인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4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9.4.21) 상정, 제안설명 및  
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도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, 생산성 향상과 경영능력 제고 등  
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 
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특별상 지원근거 마련(안 제2조)

- 대상후보자의 선정기준 변경(안 제3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전문위원 : 민병완)

- ‘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도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, 생산성 향상과 경영능력 제고 등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, 시행상 제기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개정되는 조례안의 시행과 운영상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. 특별상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대상후보자) 대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, 기술개발,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시상분야) 대상 시상분야는 다 음 각호와 같다. 1.-2. (생략) 3. <신설>	제2조(시상분야) ..... ..... 1.-2. (현행과 같음) <b>3. 특별상</b>
제3조(대상후보자) ..... ..... <u>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</u> ..... ..... ..... ..... <u>중소제조업을</u> .....	제3조(대상후보자) ..... ..... <u>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</u> ..... ..... ..... ..... <u>중소기업을</u> ....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### 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3조 (정부 등의 책무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